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0. 12 선고 2021가단14958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환철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2. 8. 24.

판 결 선 고 2022. 10. 12.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8. 6. 2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2,845,982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845,98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 D기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구상금채권의 발생

- 1)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은 2009. 10. 19. C에게 15,0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약정이율 연 19.9%, 연체이자율 연 29%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다.
- 2) 그 후 C은 위 대출원리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의 이자 지급을 지체하였다.
- 3) E은 2016. 5. 4. F 유한회사(이하 'F'라고 한다)에, F 유한회사는 2019. 6. 20.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각각 양도하면서 C에게 위 각 채권양도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 그 각 통지 무렵 각 해당 채권양도 통지가 C에게 도달하였다.
- 4) 그 후 원고는 C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21차전164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1. 2. 23. C에 대하여 원고에게 '12,678,995원 및 그중 3,640,996원원에 대하여 2021.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21. 3. 13. 확정되었다.

나. 상속 및 등기

- 1) G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각각 '이 사건 1 내지 3 부동산'이라고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17. 12. 27.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와 그 자녀들인 C, H, I, J가 망 G(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 2) C은 2018. 6. 26. 피고를 포함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과 사이에 '피고가 망인 소유의 이 사건 1 부동산 전부1)와 이 사건 2 부동산 중 331/2,954 소유지분, 이 사건 3 부동산 중 676/2,282

소유지분을 상속받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이 사건 2, 3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상속받는 반면, C은 전혀 상속받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여 2018. 7. 1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다.2) 3) 그 후 피고는 2018. 8. 27. 같은 날짜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0,000,000원으로 하는 K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의 자력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은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았고, 주식회사 L, 한국자산관리공사, M 주식회사, N자산관리회사 F(이 사건 채권의 2차 양도인)에 대한 채무를 비롯하여 다수의 금융 관련 채무를 부담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2. 판 단

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

F은 이 사건 분할협의 전에 C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F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최종적으로 양수한 원고의 양수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C은 망인 소유의 이 사건 1 부동산 중 2/11 지분을 상속하게 되었고3), 만일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비율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C이 보유하게 될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소유지분이 2018. 6. 26. 당시 C의 유일한 적극재산이 되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C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1 부동산 중 2/11 소유지분을 이 사건 분할협의를 의하여 무상으로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은 피고의 친생자이기는 하나 출생 후 큰집(O, P)으로 입양되어 친생부인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권한이 없으므로, C을 망인의 공동상속에서 제외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선해하였다).

살피건대, 양자의 경우 친양자와 달리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그대로 존속하는데(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두44847 판결 등 참조), C이 양부모에게 친양자로 입양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5호증에 의하면 C은 여전히 피고와 망인의 친생자로 등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법원으로서 C이 친생부인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할 수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C의 이 사건 분할협의 체결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므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큰집에 입양 간 C은 친생부인 망인의 사망조차 뒤늦게 알게 될 정도여서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의 재정상황을 알 수 없었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선해하였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피고 스스로, C이 사업을 하면서 양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뿐만 아니라 피고를 포함한 친생부모의 재산까지 탕진하였고, 결혼 후 거주할 아파트 구입과 체납된 세금 납부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경제적 지원까지

받았으며, 노숙생활을 하다가 몸이 아프고 갈 곳도 없어 피고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있음을 고려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채무자인 C의 재정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결국 피고와 C 사이에 2018. 6. 26. C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1 부동산의 2/11 소유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그런데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이 사건 채권이 이 사건 변론종결 시까지 변제되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시점보다 앞선 2021. 4. 16.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 사건 채권의 대출원리금 합계 12,845,982원(= 잔여 원금 3,640,996원 + 확정지연손해금 9,204,986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르기로 한다.

3)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이 사건 분할협의 후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0,000,000원으로 하는 K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됨으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1 부동산을 원물로 반환하는 것은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에게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명하기로 한다.

4)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8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면 K 주식회사의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루어진 감정평가 결과 2018. 8. 21.을 기준으로 이 사건 1 부동산의 시가가 210,300,000원으로 평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이 사건 1 부동산 중 C이 상속받았어야 할 2/11 소유지분의 시가는 38,236,363원(= 210,300,000원 × 2/11, 원 미만 버림) 상당이라고 추인할 수 있고, 달리 위 추인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는데, 원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액 12,845,982원이 이 사건 1 부동산 중 C 소유지분의 시가에 미치지 못함은 계산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피고가 반환하여야할 가액범위 내에 있는 금원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12,845,98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12,845,98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2,845,98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이순형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울산 북구 Q 대 300㎡
2. 울산 북구 R 전 2,952㎡
2. 울산 북구 S 전 2,282㎡. 끝.

1) 본래 이 사건 1 부동산 지상에는 조적조 스라브지붕 단층주택 109.4㎡ 규모의 미등기건물이 존재하나, 원고가 위 미등기건물 부분을 청구범위에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따로 거론하지 않기로 한다.

2) 다만, 부동산등기부에는 등기원인이 '2017. 12. 2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되어 있다.

3) C은 이 사건 분할협의에서 유일하게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취소대상이 되는 범위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2/11 소유지분이 될 것이다.